

**환경부 공고 제2003 - 11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협의대상, 협의방법, 구비서류 등을 정비하는 한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절차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실적의 제출시기를 보완함

나.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및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전문기관에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및 입지별 특성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을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전문기관이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대상사업중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서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의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수질분야의 환경기준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 중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정책총괄과(전화: 2110-6665)나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와 관련된 내용에 한함, 전화: 2110-66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공고 2003 - 1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 공람기간을 단력적으로 조정하고, 부실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경우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난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실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의견수렴시 공람기간을 사

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 30일 이상 50일 이하에서 20일 이상 60일 이하로 조정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을 의무화 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나. 평가 대상사업이 2개 지역 이상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공청회의 주관을 종전 사업자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 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외의 귀책사유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체수단을 인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규제완화 차원에서 평가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의 제출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일정 규모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공법의 변경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도록 함

### 2. 주요골자

가. 주민 의견수렴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평가서 초안의 공람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보완함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속 시설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신설하고,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여타 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대행자 소속기술인력의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준비 기간과 규제완화차원에서 평가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의 제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함

마.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중 자동차관리시설의 대상시설의 범위를 종전 부지면적 2만5천㎡에서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 2만5천㎡으로 하고, 기존 준공된 사업 시설의 확장 또는 증축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함

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실무 경력을 강화함

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요건의 하나로 종전 계급에 관계없이 교통직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전문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 평가대행자 책임 기준을 강화함

### 3. 기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전화 : 02-504-9287 팩스 : 02-504-6214) 문의

### 3. 기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문의(전화 : 02-504-9287 팩스 : 02-504-6214)

환경부 공고 2003 - 17호

환경부 공고 2003 - 18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 환경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착공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영향조사항목을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 등으로 함

#### 3. 기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에 문의(전화: 02-504-9287 팩스: 02-504-6214)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2002.12.26, 법률 제6831호)으로 지방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의 일부를 부여함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사건 관할 범위를 정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포함된 일조방해 사항중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철교 등)에 의한 일조방해를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조정목적의 가액(배상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제정은 지방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2항 신설)

다. 분쟁조정에 관여한 관계전문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경우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분쟁 당사자에게 명단을 통지토록 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라. 환경단체의 조정신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함(안 제20조)

마. 경미한사건 범위의 조정가액을 조정함(안 제26조)

#### 3. 기타문의

법무담당관실[전화: 02)504 - 9234, FAX: 02)503 - 9876], 전자우편: choiyh@me.gov.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 제2003 - 21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환경부공고 제2003 - 25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2002.12.26, 법률 제6831호)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재정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등을 개선·보완함

### 2. 기타문의

법무담당관실(전화: 02)504 - 9234, FAX: 02)503 - 9876],

### 3. 기타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질정책과에 문의 (전화: 2110-6830~2)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공고 제2003-2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다목적댐이 소재한 시·군의 도시지역 50퍼센트 이상이 댐주변지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시·군 전체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지역에 포함하는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대상지역을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다목적댐이 소재한 시·군의 도시지역 50퍼센트 이상이 댐주변지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시·군 전체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지역에 포함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중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댐주변지역내 댐하류지역을 주민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함
- 나.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일반지원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I 급수로 개선하는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토록 함

##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3 - 42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중 차량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2. 기타문의

산업자원부, 전화: 02-2110-5423, 팩스: 02-504-5001

##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9.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2월 1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 유독물·관찰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3-1-535란 다음에 2003-1-53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003년 2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별표1]

유독물(제3조 관련)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3-1-536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Tetraiso-cyanatosilane; 3410-7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삼키면 유해함.	•증기/분무 등을 호흡하지 말 것.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환기가 불량한 경우 적절한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고시의 시행당시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3-43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의 조사·확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39조제1항)

3. 기타

산업자원부, 전화: 02-2110-5423, 팩스: 02-504-5001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9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2월 2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별표의 2003-3-2289 란 다음에 2003-3-2290 내지 2003-3-2320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3-2290	$\alpha$ -Cyclohexylidene benzeneacetonitrile (CAS No. 10461-98-0)
2003-3-2291	Ethenylbenzene polymer with 1,3-butadiene and 2-methyl-1,3-butadiene, hydrogenated (CAS No. 132983-38-1)
2003-3-2292	[총칭명] Methyl oxirane polymer polyalkylene, isocyanated benzene and oxirane
2003-3-2293	$\alpha$ -[[3-(Trimethoxysilyl)propoxy]methyl]-1H-imidazole-1-ethanol (CAS No. 149394-70-7)
2003-3-2294	[총칭명] Polyalkylene glycol alkyl ether, reaction products with diisocyanatoalkane and polyalkylene glycol
2003-3-2295	"2-Acrylamido-2-methylpropane sulfonic acid polymer with 1-ethenyl-2-pyrrolidinone and 2-ethyl-2-[[1-(oxo-2-propenyl)oxy]methyl]-1,3-propanediol 2-propenoate (CAS No. 부여안됨)"
2003-3-2296	[총칭명] Substituted ethyl acrylate polymer with fluorinated alkyl(C=6-20), alkyl amine and epoxyated alkyl substituents, acetates
2003-3-2297	"(4-Methylphenyl) [4-(2-methylpropyl)phenyl] iodonium hexafluorophosphate (CAS No. 344562-80-7)"
2003-3-2298	Carbonic acid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2,2'-dimethyl-1,3-propanediol, hexanedioic acid, 1,6-hexanediol,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4-methyl-1,3-dioxolan-2-one, 2,2',2''-nitrilotrisethanol and 2-oxepanone, oxime 2-butanone-blocked (CAS No. 부여안됨)
2003-3-2299	4,5-Dihydroxy-1,3-bis(hydroxymethyl)-2-imidazolidinone reaction products with diethylene glycol (CAS No. 102923-00-2)
2003-3-2300	[총칭명] Alkyl methacrylate polymer with alkyl alkenoic acid and alkenoic acid
2003-3-2301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ethenylbenzene, 2-ethylhexyl 2-propenoate and (1-methylethenyl)benzene (CAS No. 95654-84-5)
2003-3-2302	Phosphoric trichloride reaction products with phenol and [1,1'-biphenyl]-4,4'-diol (CAS No. 부여안됨)
2003-3-2303	Fatty acids, (C=8-18) and (C=18) unsatd. polymers with adipic acid and pentaerythritol (CAS No. 261767-39-9)
2003-3-2304	1,3-Dihydro-1,3-dioxo-5-isobenzofurancarboxylic acid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1,6-hexanediol and 1,3-isobenzofurandione (CAS No. 156477-82-6)
2003-3-2305	[총칭명] Substituted methacrylic acid polymer with alkyl acrylate and branched alkyl acrylate
2003-3-2306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2E)-2-butenedioic acid, 1,3-dihydro-1,3-dioxo-5-isobenzofurancarboxylic acid, $\alpha,\alpha'$ -[[1-methylethylidene]di-4,1-phenylene]bis[ $\omega$ -hydroxypoly(oxy-1,2-ethanediyl)] and $\alpha,\alpha'$ -[[1-methylethylidene]di-4,1-phenylene]bis[ $\omega$ -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CAS No. 168406-64-2)
2003-3-2307	"1,6-Isocyanatohexane homopolymer $\alpha$ -fluoro- $\omega$ -(hydroxyethyl)poly(difluoromethylene) and oxime 2-butanone and polyethylene glycol mono-Me ether-blocked (CAS No. 428842-38-0)"
2003-3-2308	[총칭명] Methacrylates polymer with substituted ethanols, isocyanated benzene and 2-oxepanone alkyl ester, branched alkylamine-blocked
2003-3-2309	[총칭명] Methacrylic acid polymer with acrylate and acrylated polyoxyethylene
2003-3-2310	Butanedioic acid, mono-2-alkenyl(C=16-18) derivs., dipotassium salts (CAS No. 118299-89-1)
2003-3-2311	[총칭명] Maleic ester grafted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2003-3-2312	2-Methyl-2-[[1-(oxo-2-propenyl)amino]-1-propanesulfonic acid, monoammonium salt, homopolymer (CAS No. 62152-14-1)
2003-3-2313	[총칭명] Siloxane and silicone, polypropylene polyethylene succinate
2003-3-2314	[총칭명] Vinyl silane reaction products with magnesium hydroxide
2003-3-2315	"1,4-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1'-biphenyl]-4,4'-diol, 4-hydroxybenzoic acid and 6-hydroxy-2-naphthalene carboxylic acid (CAS No. 122122-87-6)"
2003-3-2316	[총칭명] Substituted vinylsilane reaction products with aluminium hydroxide
2003-3-2317	[총칭명] Aminosilane reaction products with magnesium hydroxide
2003-3-2318	[총칭명] Aminosilane reaction products with aluminium hydroxide
2003-3-2319	[총칭명] Vinylsilane reaction products with aluminium hydroxide
2003-3-2320	1,1,2,3,3,3-Hexafluoro-1-propene telomer with chlorofluoroethene, oxidized, reduced, Et ester (CAS No. 374931-83-6)

**환경부고시제 2003-43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수계 완충 저류 시설설치 산업단지 지정

**1. 대상 지역**

대구염색, 대구달성, 함안칠서 산업단지

산업 단지	완충저류시설설치예정지주소
대구염색	대구 서구 상리동 649-1 일원
대구달성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1 일원
함안칠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164-2 일원

**2. 설치시기**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 개정사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대상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구입을 유도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대상품목 확대 : 현행 23개품목 → 28개품목(5개품목 확대)

○ 추가품목 현황

대상품목	대 상 범 위
직화흡수식	정격 냉방능력 400USRT(1,207kW), 정격 난방
냉온수기	능력 1,060,000kcal/h(1,233kW) 이하인 것
단상유도전동기	유동형의 경우는 1.5kW, 콘덴서 기동형의 경우 2.2kW 이하인 것
환 풍 기	소비전력이 100W이하인 것
원심식송풍기	임펠러의 직경이 315mm~1,250mm 이하인 것
16mm형광램프용 안정기	입 · 출력 효율이 0.95이상인 것

□ 적용범위 확대

-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및 나트륨램프용안정기에 대하여 KS기준이 제정('02. 1. 1 시행)됨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하고,
  - 전자식안정기에서 자기식안정기도 포함하여 시행

○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 적용범위를 현행 수온감지형 밸브에서 기온감지식도 포함

○ LED 교통신호등

- 원형직경 300mm LED교통신호등에서 200mm LED 차량보조등 까지 확대하고,
- 고효율 시험항목을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을 반영

□ 고조도반사갓 효율기준 강화

- 반사판의 반사율 강화 : 90%이상 → 93%이상
- 퇴색방지율 강화 : 90%이상 → 95%이상
- 재료의 다원화(알루미늄 → 페인팅, 철판)에 따라 재료의 부식, 도료의 두께, 필립의 접착력 등의 기준신설

□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시험방법 개선

○ 고효율인증 신청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정밀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중복시험 방지('03.5.1부터 시행)

○ KS기준에서 정밀검사시험 적용함에 따라 시험항목 변경

□ 자체시험기관 지정기준 강화

○ 자체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로 기준 강화('04.4.1부터 적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개정('02.11.12)내용 반영

□ 기술기준 변경

○ 산업·건물용 보일러의 효율 재현성 확보를 위해 온수보일러의 시험온도를 80℃이상으로 규정하고, 폐열회수장치 부착시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물의 온도를 출구온도만 지정(40±2℃)

○ 인버터의 기술기준을 용량에 따라 9단계의 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내 모델 중 가장 큰 모델을 시험하였을 경우 군내 타 모델은 시험 면제

□ 기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고시란 참조. 끝.

**환경부공고 제 2003-32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대상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며, 정화조청소업의 차량확보기준 강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단일화에 따른 해당업체의 인력 및 장비부담을 경감하는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국민불편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도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역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정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나. 당초보다 50%이상 증가되는 건물 및 기존 건물 인근에 새로이 설치되는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 수준의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부여(안 제6조의2제1항)

다.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분뇨등 재활용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라.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명령 규정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마. 정화조청소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부실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량확보기준을 특별시 45천리터, 광역시 30천리터, 기타지역 25천리터(인구 5만이하 지역은 7.5천리터, 도서 등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로 강화(안 별표 6)

바. 설계·시공업 통합에 따라, 기존 업종을 업종내 분야로 하고, 통합분야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의 부담 완화(안 별표 6의2)

사. 단독정화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개정사항을 재질검사 규정에 반영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서면검사를 없애고 모두 실제성능검사를 받도록 함(안 별표 7의2)

**3. 기타문의**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청사 환경부 생활오수과)

**환경부공고 제 2003-33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축산폐수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퇴비·액비의 관리기준 강화 및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격·기준·시험방법 등에 대한 보완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국민불편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되는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수수질 기준 설정 근거 마련 및 측정의무 부여(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43조제1항)

나.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설치신고시 약식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여, 등록제품과 동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안 제13조 및 제19조, 제23조제2항 등)

다. 오수처리시설등 준공검사 신청시 재질검사성적서, 현장사진등을 제출토록 하여 검증자료로 활용(안 제23조제1항)

라. 축산폐수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을 현행 1일 1톤 이상

에서 1일 400킬로그램 규모로 확대하여 신고 대상축산업자와 형평성 유지(안 제39조제1항)

마. 축산폐수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축산폐수 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축종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바.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축분 분리·저장시설의 종류 등 규정(안 제52조)

사. 축산 퇴비·액비의 확보농지에 균등살포, 생산·처분내역 기록유지, 적정보관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안 제59조제1항)

아. 분뇨처리담당자등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규정을 삭제하되, 위반행위 적발시 재교육의무를 부과(안 제100조)

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기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3,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 유량조정용 용량을 기준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강화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칸막이 등에 대한 두께 규정 마련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규정을 동절기 3개월을 모두 포함하는 규정에서 50일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완화
- 재질검사 방법 중 한국산업규격 변경내용 반영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품마다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처리효율 차이에 따른 사용가능지역 표시 의무화 등

**3. 기타문의**

환경부 생활오수과(02) 504-9255) 